<펀드 표준 판매매뉴얼>

본 펀드 표준 판매매뉴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가 사모펀드 또는 공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표준 판매매뉴얼은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Ⅰ. 판매의 단계

○ 판매사는 판매의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세부 절차와 주의사항을 마련하여야 함

- 표준 판매매뉴얼에서는 판매의 단계를 [붙임 1]과 같이 4단계로 구분

1단계(투자자정보 파악) → 2단계(펀드에 대한 설명) → 3단계(투자자 의사 확인) → 4단계(사후 관리)

Ⅱ. 판매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주의사항

□ 1단계 : 투자자정보 파악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일반투자자 또는 개인인 전문투자자인 경우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①. 펀드 판매(상담)는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 가능

②.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확인

- 일반투자자로 이동이 가능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과 일반투자자로 이동할 경우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고지

  *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이동하지 않는 한 일반투자자로 대우

<전문투자자의 범위>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3-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3-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3-9.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3-10. 종합금융회사
3-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
3-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3-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3-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18. 제3-1호부터 제3-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5. 협회
5-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5-7.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5-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5-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5-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5-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5-10호 및 제5-11호는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5-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5-14. 지방자치단체
5-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5-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5-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5-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5-1호부터 제5-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③. 신규 고객 등록 절차 (New Client Adoption Process)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무현황, 투자경험, 법적능력 등을 파악

-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임을 설명

- 판매사는 신규 고객 등록 절차 (New Client Adoption Process)등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 정보 관련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기록보관)에 따른 <별표 12>에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권유및 투자계약 관련자료**에 대해 **10년 이상 보존**하도록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중 <별표 12>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
(제4-13조 관련)

구분	자료의 종류	최소보존 기간
영업에 관한 자료	**1. 투자광고,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 ①. 투자자의 일반정보(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 - 투자자가 다수의 계좌·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기록으로 대체가능 ②. 약관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서신, 안내문, 투자권유문서 등을 포함) - 약관,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위험고지문서 제공시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포함 -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인서류 ③.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를 제외한 광고의 사본 - 방송광고 등은 광고문안 및 광고내용 ④.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 관련 -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장 - 상근임원의 승인서류,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서류 -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제반서류 ⑤. 투자계약서 또는 계좌계설 관련서류	**10년**

영업에 관한 자료	**2. 분쟁 등 제1호외에 투자자와 관련된 자료** ①. 투자자의 예탁재산 출납기록 - 투자자별 예탁재산 종류별로 입출고(금), 출납기록, 시기 ②. 투자자예탁재산 보관기록 - 예탁증권의 종류, 수량, 보관처, 질권설정여부 등 - 별도예치금 일별금액 및 산출근거	**5년**
	3.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 자료 ①. 투자자의 주문기록(주문일부터 1년간 보관) - 투자자별 증권거래 및 파생상품의 주문정보(종목, 주문호가, 시기, 호가종류, 주문접수자 등) ②. 투자자의 매매거래기록 - 매매거래 체결정보(시기, 종목, 가격, 제세공과금 등) ③. 일일정산대장 등 그 밖에 투자자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	**10년**
	4.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자료 ①. 공통자료(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 자산배분내역서, 매매주문서, 매매보고서, 자산대여·대차 등 운용지시서, 부동산 등 투자대상자산 관리위탁계약서, 부동산 등 매매·임대차등 계약서, 대출계약서 및 예금·보험금등에 대한 근질 및 근저당 등 담보권설정서류, 이자·공사비·등기비용·제세공과금 등 납부서류 등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관련자료 -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회의록,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기준가격 오류 수정 및 재공고에 관한 기록 등 ③. 투자일임재산 운용관련자료 - 투자일임보고서, 일임재산운용내역서 ④. 신탁재산 운용관련자료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신탁재산명세서, 신탁재산운용내역서 등	**10년**
	5. 업무위탁 및 부수업무 관련 자료 ①. 업무위탁 관련자료 - 업무위탁계약서(Delegation Agreement), 업무위탁 운영기준,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수탁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자격증빙서류 ②. 조사분석자료 등에 관한 기록 - 조사분석자료, 배포시기(최초 배포시기, 일반공표시기)	**3년**

재무에 관한 자료	**6. 재무에 관한 서류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①.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회계장부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 현황, 변경내역 ③. 증권보유기록(자기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 증권 종류별, 수량, 보관방법 등에 관한 기록 ④. 증권 매매기록(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파생상품 거래기록(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록 - 내부품의, 거래목적, 거래동기, 공정거래(arm's length rule) 적합여부, 거래대상, 거래시기, 수량·가격, 거래사유	**10년**
업무에 관한 자료	**7.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8.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는 거래 관련 자료	**5년**
	9.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10. 자산구입·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11.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관련 자료** ①.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사항 -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준법감시인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준법감시인의 역할, 내부통제활동 등 ③. 내부감사활동에 관한 기록 - 내부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5년**
	12. 임원·대주주·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인력 및 이해관계자 관련 자료	**5년**
그 밖의 자료	**13. 다른 법령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①.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민원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민원내용, 민원일자 등 ③.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인가, 각종 지침, 비조치의견서 등 ④. 각종 계약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 투자자가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DB Group KYC Policy 및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무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이하 " 서명등"이라 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내부 신상품 승인 위원회를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법적능력 및 펀드 투자 권유의 적합성 및 펀드 상품의 적정성 검토후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 투자자정보 수집 및 확인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과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과 위탁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1) 대리인이 전체적으로 투자자정보 관련 서류 제출 2) 대리인이 부분적*으로 투자자정보 관련 서류 제출 * 대리인이 위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에 한정 3) 대리인이 투자자정보 응답 없이 펀드 선택(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선택하는 경우 포함)

• 다만, 회사는 위임장 양식에 **투자자정보 응답***, **펀드(상품) 선택** 등의 **위임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법 제46조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투자자정보

※ 대리인의 적합성원칙 적용 문제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업무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④. 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음

□ 2단계 : 펀드에 대한 설명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펀드의 운용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보수·수수료 및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환매방법 등을 설명

회사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는 펀드를 권유해서는 아니 됨

⑤.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투자권유 펀드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이용할 수 있음

※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펀드의 명칭 및 종류

•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당해 펀드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 당해 펀드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항

•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 기타 법령 및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사항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설명

• 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가격변동위험, 투자기업의 부도위험, 금리변동위험) 외에 환율변동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환율변동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펀드의 환위험 헤지 여부 등

• 펀드 판매 당시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별 투자비율

※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설명

• 펀드의 주요 특성 외에 추가적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구체적인 구조, 투자대상 등)

- 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추가적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

- 투자대상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정보

* 회사가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펀드(또는 펀드와 관련된 계약) 또는 투자자가 매수하는 펀드가 **투자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여야 함

□ 3단계 : 투자자 의사 확인

-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 권유를 중단
-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시 : 펀드 매수 절차 진행

⑥-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 다른 펀드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판매 절차 2단계 반복
-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투자권유 종료

⑥-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펀드 매수 절차 진행

- 투자방식(거치식·적립식 등 / 자동이체·자유납입 등) 상담, 결정

- 회사는 펀드 판매 임직원의 성명(실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함

- 펀드 거래 관련 제반 서류 보관·관리.

※ 판매사 및 판매 임직원 주요 금지행위

- 투자권유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다만,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위 사항 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투자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자기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기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는 행위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이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예컨대,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2004.1.15. 선고 2202다51517판결))

- 투자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하는 행위(서울중앙지법 2006.3.22. 선고 2006가합63582 등)

- 투자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임의의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서울고법 2003나45825 판결 참조)

□ 4단계 : 사후 관리

투자자의 펀드 매수 이후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주기적 잔고통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제공

⑦. 투자자 사후관리 서비스

- 수동적 서비스 :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 적극적 서비스 :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Ⅲ. 회사별 적용

○ 본 판매매뉴얼을 판매 임직원 등에게 교육하고 실제 판매시 활용해야 함

[붙임 1]

판매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투자자정보 파악	**펀드에 대한 설명**	**투자자 의사 확인**	**사후 관리**
•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	•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펀드의 운용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보수·수수료 및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환매방법 등을 설명	•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 권유중단 •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펀드 매수 절차 진행	• 투자자의 펀드 매수 이후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주기적 잔고통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제공

[붙임 2]

<투자자 체크리스트>

투자자 체크리스트는 펀드 거래에 있어 투자자가 최소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판매사로부터 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들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므로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판매 임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확인란에 ○ 또는 √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판매 임직원에게 다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명칭 및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 들었습니다.

□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펀드 투자시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펀드 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및 환매연기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그 외 회사가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

2009년 ○○월 ○○일

• 투자자 성명 :	• 판매자 성명 :

[붙임 3]

판매 세부 절차 등 요약

판매 단계	세부 절차	주의 사항 등
1단계	① 펀드 판매(상담)는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 가능	
1단계	②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확인	일반투자자로 이동이 가능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과 일반투자자로 이동할 경우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고지
1단계	③ 신규 고객 등록 절차 (New Client Adoption Process)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무현황, 투자경험, 법적능력 등 파악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임을 설명
1단계	④ 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음	
2단계	⑤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투자권유 펀드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이용할 수 있음
2단계	⑤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투자권유 펀드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펀드의 명칭 및 종류 •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당해 펀드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 당해 펀드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항 •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 기타 법령 및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사항 ※ 해외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설명 필요
3단계	⑥-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⑥-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투자자에게 설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설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3단계	⑥-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⑥-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다른 펀드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판매 절차 2단계 반복
3단계	⑥-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 재차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투자권유 종료

	⑥-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3단계	⑥-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⑥-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투자방식(거치식·적립식 등 / 자동이체·자유납입 등) 상담, 결정
3단계	⑥-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⑥-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회사는 펀드 판매 임직원의 성명(실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함
3단계	⑥-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⑥-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펀드 거래 관련 제반 서류 보관·관리.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사본 1부 제공하고 원본은 판매사가 보관
4단계	⑦ 투자자 사후관리 서비스	수동적 서비스 :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4단계	⑦ 투자자 사후관리 서비스	적극적 서비스 :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